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5. 19

나. 제안자 : 제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5. 20

라. 상정일자 : 1995. 5. 25 (제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권한사무증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 및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읍·면에 위임

- 당초42건, 철회24, 추가26, 부서조정1, 개정44건(증2건)

○ 동에 위임

- 당초12건, 철회4, 추가21, 개정29건(증17건)

○ 내부위임규정 폐지

-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제천시 내부위임 규정은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지

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생활보호법, 폐기물관리법등 각 분야별 관련 법규와 그 시행령 및 제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등 관련 조례들과 일일이 대조 검토하여 상이사항은 보완 완료하여 법적하자나 문제는 없는것으로 사료됨.

나. 다만 읍면위임 사무중 세정과의 지방세 체납분의 5건, 건설과의 도로점용허가와 7건에 대하여는 지방세, 지방도와 같이 지사관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라 별도로 도의 승인을 얻어 시의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에서는 제외시킨바 순수하게 시장의 권한 사항만 위임하는 것으로 불합리 한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심사보고서 유첨서류

- 제천시사무의음·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